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된

2020년도 감염병 관리사업지침

협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
2020년도 감염병 관리사업지침을 소개합니다.

본 지침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감시,

역학조사, 실험실 검사,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관리,

감염병 예방, 방역, 지자체 역량강화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수행의
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작하였습니다.

해당 내용은 질병관리본부의 <2020년도 감염병 관리사업지침>을 발췌하였습니다.

사업장 특성과 사정에 따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

1 감염병
관련
자원관리

방역

가. 입원 격리·치료시설 확보

1)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

기관 지정 기준: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한 「의료법」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

2) 감염병 관리기관 운영

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환자 등을 진료하는 시설(감염병관리시설) 설치

설치기준

- ① 음압병상: 15㎡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
- ② 전실: 음압병상이 있는 음압구역과 비음압구역을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
- ③ 확장실: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에 설치할 것
- ④ 음압용 공급·배출 시설: 다른 공급·배출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하고, 헤파필터(HEPA filter)를 설치할 것
- ⑤ 음압용 역류방지시설: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의 배관에 설치할 것
- ⑥ 음압용 배수처리집수조 시설: 다른 배수처리집수조 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할 것

운영기준

- ①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 간에, 전실과 비음압구역 간의 음압차를 각각 -2.5 pa (-0.255 mmAq) 이상 유지할 것
- ②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은 1시간에 6회 이상 환기할 것
- ③ 배수처리집수조에 있는 물은 소독하거나 멸균한 후 방류할 것

3) 감염병 위기 시에는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 가능

※근거법령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(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), 제37조(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)

나. 재해 대비 감염병 예방물품 비축

가) 재해 대비 감염병 예방물품 비축

(1) 목적

재해로 인한 감염병의 발생을 대비한 감염병 예방물품의 비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함

(2) 비축 방침

- 감염병 예방물품 및 방역물품은 상시 비축함.
- 지역 실정에 따라 보건소에 비축하며, 각 시·도에서도 비축량을 확보하여 재해 시 필요한 시·군·구에 지원

(3) 관리방법

- 일반 감염병 예방물품과 재해대비용 감염병 예방물품은 구분 없이 동일 장소에 보관·관리하되 최소한의 재해대비용 비축량을 유지, 관리
- 감염병 예방물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지원방식은 선입선출식으로 하고 특히 유효기간이 있는 물품은 유효기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적의 조치

(4) 재고관리

- 관리대상 비축물품 품목(중양)

일정 품목 비축량을 최소한 유지·비축

품목		용량/단위	비고
손 세정제	고체비누	100 g/개	※품목, 용량 변동 가능
	액체비누	250 ml/개	
손 소독제		50~75 ml(휴대용), 500 ml/개	
차아염소산나트륨제제		1ℓ, 500 ml/개	
살충제	유충구제용, 분무용, 연막용	450 ml, 500 ml, 1ℓ/개	

- 관리 대상 비축물품 품목(시·도 및 시·군·구)
 - 지자체 실정에 따라 비축하고, 중앙에서 지원된 물품에 대해서는 활용한 상세 내역을 연 1회 작성·보고

가. 취약지 현황 파악

① 대상

- 하수구 및 비위생적인 지역
- 쓰레기 매립장, 늪, 장기간 고인물이 있는 곳 등 비위생적인 지역
- 집단수용시설, 향·포구 관광유원지
- 홍수, 침수 지역 등 재해 지역



2 취약지 방역 활동



- 검역 구역 내 취약 지역(국립검역소장이 관할 보건소장 등과 협의를 통해 선정)
- 대규모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행사장 및 선수단 이용시설 등
- 기타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

② 취약지 관리계획 수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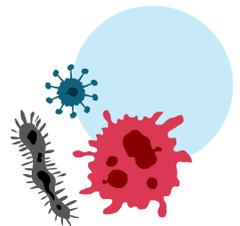
- 취약지역에 대한 인구, 면적 및 취약요인 등을 정밀 분석하여, 사업 개시 전에 관리 계획을 수립

③ 감염병 예방관리활동 추진

- 동계(10월~3월): 2주 1회 이상
- 하계(4월~9월): 주 1회 이상
- ※ 자체적으로 수립한 취약지 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되,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을 참조하고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침에 기준에 따라 시행

나. 살충제 살포방법

- 지역 실정 및 매개체발생 여부에 따라 적절한 소독 방법 사용
- ※ “주요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관리지침”, “흰줄숲모기 유충방제 관리지침” 참고



3 소독업 및 소독의무 대상시설 관리

다. 식수관리 강화

- 급수원 소독강화: 오염 우려가 있을 시는 관말 수도전에서 채취한 식수의 유리잔류 염소량을 0.4 mg/ℓ (ppm) 이상 유지하고, 0.4ppm미만의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통보
- 지역 내 급수해결이 불가능 시 대체 급수원 지정 또는 관계 부서와 협조하여 급수차 동원
- 우물 등 급수시설의 침몰 시에는 물을 퍼내고 염소 소독 후 안전을 확인하고 음용토록 관계 부처와 대책 마련

라.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강화

- 화장실, 하수구, 쓰레기처리장 등 취약지역에 대하여 살충제 살포, 살균 소독을 순회 실시하며, 재해 지역과 이재민 수용시설은 반복 소독 실시

마. 방역장비 및 물품관리

- 긴급 방제 실시 등을 예측하여 적정 수준의 방역 장비를 구비하여야 함
 - 방역업소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받아 감염병 예방관리활동을 실시할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물품의 적정사용 여부에 대하여 지도·감독 실시
- ※ “주요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관리지침”, “흰줄숲모기 유충방제 관리지침” 참고

가. 소독업자 관리

• 소독업 신고 및 변경사항 신고 등

-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·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

• 시설·장비 및 인력 기준

- ※ 사무실은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장소여야 하며 사무실과 창고는 안전을 위해 공간적·기능적으로 분리되어야 함(파티션, 자바라 등 불가), 사무실과 창고 간 거리는 원칙적으로 같은 시·군·구 내에 위치하되 관리·감독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인접 시·군·구도 가능
- 신고사항의 변경에 대해 변경신고서 등 제출하되, 소재지 변경 시에는 새울행정시스템을 통한 전출처리 및 전입신고 가능

• 소독업자 및 종사자 교육

- 소독업자(대표자): 소독업 신고 후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, 매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
- ※ 다만, 「민법」과 (법인의 경우)정관에 따라 소독업 신고자와 대표권이 있는 자가 다



른 법인의 경우에는 소독업에 대한 대표권이 있는 자만 교육을 받으면 인정하며, 종사자를 관리자로 지정하여 교육을 대리하는 것은 불가

- 종사자에서 대표자로 변경, 대표자에서 종사자로 변경 또는 다른 소독업소로 이직한 경우, 교육이력이 3년을 지나지 아니한 경우 유효한 것으로 봄. 단, 대표자 교육과 종사자 교육은 서로 같음할 수 없음

• 행정 처분

- 소독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행정처분
- 영업정지처분 중 또는 예정일 경우, 폐업신고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고를 수리할 수 있음

• 그 밖의 준수사항

- 소독약품 사용: 「약사법」 제2조제7호 다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제품을 용법·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
- 소독실시 관한 서류는 2년간 보관하며, 관계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시 제출

나.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

•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(소독의무대상시설)의 종류 및 소독횟수

- 연면적, 정원, 객실수, 객석수, 급식인원 등 해당 영업에 신고된 사항을 기준으로 대상 시



설을 판단하되 그 기능을 시작한 날(입주일, 영업개시일 등) 기준으로 소독횟수 산정
 ※휴업 신고 등 시설을 운영하지 않음이 명백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소독의무 제외 가능

- 소독업자가 해당 시설 또는 건축물 중 소독이 필요한 부분을 판단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
 ※소독업자가 시설 현장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직접 소독 실시

• **과태료 처분**

- 과태료 부과: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라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능
- 과태료 처분: 현재 운영주체와 관계없이 위반 행위 시 그 대상시설을 관리·운영하였던 자에게 부과

다. 그 밖의 준수사항

• **소독의 대상과 방법을 준수**

- 소독의 범위: 살균, 살충, 구서 및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 저수탱크 및 냉각탑에 대한 소독 등 포함
- 소독의 방법: 청소, 소독, 질병매개곤충 방제, 쥐의 방제 등 포함



1 환자 발생 시 조치사항

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관리

– 환자 발생 신고 또는 인지 즉시 역학조사반을 현지에 파견하여 다음 조치사항 실시

가. 1차 조치사항

- 환자 격리
- 역학조사 실시
- 환자 및 인근 주변 소독
- 환자 발생 보고: 감염병 환자 발생보고서식 활용
- 보건교육 및 홍보

나. 의심검체에서 원인병원체 확인

- 균분리동정 및 확인시험: 시·군·보건소 및 시·도 보건환경연구원
- 보건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분리병원체를 반드시 송부(또는 시험의뢰)
- 감염병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, 감염병 관리 대책을 조기에 마련하기 위해 이들 원인 병원체에 대한 항생제 감수성시험, 독소시험, 파이저형시험, PFGE 유형 분류시험 실시
- 보건환경연구원은 PFGE 수행결과 및 분석 보고서를 질병관리본부로 제출(질병관리본부 외 자료 제공 시 질병관리본부 해당과와 결과분석을 거쳐 제공)

다. 양성 판정 시 수행사항

- 환자격리 및 환자 주변 살균·소독
- 감염경로 추적조사
- 환자 및 보균자 관리카드 작성 및 추적관리
- 추가환자 발생 일일 모니터링
- 해당 감염병 정보 제공 및 보건 교육

라. 감염병 환자 입원 치료 및 업무중사 일시 제한

1) 법령상 업무중사의 일시적 제한대상

- 콜레라, 장티푸스, 파라티푸스, 세균성이질,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, A형간염
: 환자, 의사환자, 병원체보유자
- 결핵: 전염성 결핵환자



- 성매개감염병 :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을 경우

2) 감염병 환자의 업무제한 대상 직업

- 콜레라, 장티푸스, 파라티푸스, 세균성이질,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, A형간염
: 집단급식소, 식품접객업 관련

- (1) 「감염병예방법」 제45조(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
- (2)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12호 및 제36제1항제3호

- 결핵: 의료인, 보육교직원 및 교직원, 선박 및 항공 승무원 등

- (3) 「결핵예방법」 시행규칙 제5조(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)
- (4)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
- (5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에 따른 보육교직원과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
- (6) 「선박안전법 시행규칙」 제15조제5항에 따른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승무 업무 및 「항공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객실승무원의 1회 8시간 이상 비행근무 업무
- (7)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공중(公衆)과 직접 접촉하는 횟수가 잦거나, 영유아·임산부·노인 등 결핵발병 고위험군과 대면하는 빈도가 높아 호흡기를 통한 전염성결핵의 전파가 우려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

- 성매개감염병: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사자

- (8) 「성매개감염병」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
- (9) 「청소년보호법 시행령」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
- (10)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 접객원
- (11) 「안마사에 관한 규칙」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
- (12)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

2 접촉자 관리

- 밀접 접촉자는 마지막 접촉가능 시점부터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까지 발병 여부를 감시
- 식품업 종사자, 수용시설 종사자 등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음식 취급, 탁아, 환자 간호 등 금지
- 감염병별 지침에 따라 예방접종 또는 면역글로불린 투여
-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지도
- * 메르스, 시 등은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신고(감염병별 지침 참조)

3 소독시 준비 및 주의사항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집단시설·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
*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

※자세한 사항은 [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]-[알림·자료]-[법령·지침·서식]-[지침]-[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-19 감염예방 집단시설·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] 검색

1. 일반 원칙

- 소독을 담당하는 직원은 감염예방 교육을 받아야 함
- 소독을 담당하는 직원은 청소나 소독 시 반드시 개인보호구 착용
 - * 보건용 마스크, 전신보호복 또는 소매를 덮는 앞치마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, 신발덮개 또는 고무장화, 일회용 이중 장갑(겉장갑은 고무장갑)
- 환경 표면에 환자의 분비물(구토물, 혈액 등)이 있으면 적절하게 소독이 되지 않으므로 환경 소독 전 표면을 닦아냄
 - 소독제를 적신 천(타올)을 이용하여 청소를 시행
 - * 감염성 물질의 에어로졸화 가능성을 막기 위해 빗자루나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한 청소

방법을 사용하지 말 것

- 소독제를 분사해서 사용하지 않고, 깨끗한 천(타올)에 소독제를 적시거나 제품화된 소독 티슈(타올)를 이용하여 환경 표면을 철저히 닦아냄
- 소독에 사용하는 도구는 가능한 일회용을 사용하거나 전용으로 사용
 - * 단, 청소도구를 재사용하는 경우, 적절한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한 후 건조시켜 보관

2. 소독 전 준비 품목

- 개인 보호구(일회용 장갑, 보건용 마스크, 일회용 가운, 장화, 고글 등)
 - * 일상 소독은 일회용 장갑과 보건용 마스크(KF94, KF99, N95)를 착용하고 감염 오염 정도에 따라 일회용 가운, 고글, 장화 등 추가로 착용)
- 환경소독제
 - (종류) 차아염소산나트륨, 알콜(70%), 페놀화합물(phenolic compounds), 제4급암모늄화합물, 과산화물(peroxygen compounds)
 - 환경부에서 허가받은 제품별 사용 용도 및 용법 · 용량을 준수하여 소독 시행
 - ☞ 의약외품 중 코로나바이러스 소독 가능 제품 (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)
 - 환경소독제 사용 시 희석배율, 접촉시간,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제조사 권장사항 준수
 -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은 소독 전에 희석하여 준비(500ppm, 1000ppm)

※ 차아염소산나트륨(예: 가정용락스) 희석 방법(예)

- 희석배율: 0.05% 혹은 500ppm
- 희석방법(1 ml 희석액 기준):
 - 4% 락스를 1:100 으로 희석: 물 1,000 ml, 4% 락스 12.5 ml
 - 5% 락스를 1:100 으로 희석: 물 1,000 ml, 5% 락스 10 ml
- 접촉시간: 구멍이 없는 표면은 10분 이상, 물품 침적 시 30분 침적

* 알콜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표면(예: 금속)에 사용

* 다른 소독제가 고려되는 경우 제조업체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적인지 확인하고 소독제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준비하고 적용

- 갈아 입을 옷
- 의료폐기물 전용용기, 양동이/쓰레기통, 일회용 천(타올), 물 등

3. 소독 중 주의사항

- 일회용 장갑, 일회용 긴팔 가운, 고글 및 보건용 마스크, 장화 등을 개인보호구 착용방법에 맞게 착용

☞ 개인보호구 착용 및 탈의방법 참조

- 개인보호구를 착용 후에는 코와 입을 만지지 말 것(고글은 손이 눈에 닿지 않도록 함)
- 장갑이 더러워지거나 손상되었다면 제거하고 새 장갑(한쌍)을 착용
- 마스크가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 안전하게 벗어 버리고 다시 착용

4. 소독 후 예방 조치

- 소독이 완료된 후 모든 개인보호구를 안전하게 탈의

☞ 개인보호구 착용 및 탈의방법 참조

☑ 개인보호구는 지침에 따라 제거하며 오염물이 묻지 않도록 탈의하는 것이 중요

- 소독을 실시한 직원은 개인보호구를 제거한 직후와 청소 및 소독 작업 완료 후 비누와 물로 손씻기
- 사용된 모든 일회용 개인보호구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린 다음 단단히 밀봉하고 절차를 따름
- * 사용한 고글은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재사용 가능하면 사용한 후에 소독
- 소독을 실시한 요원이 발열,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에 보고

4 대상별 소독방법

1. 환자의 거주 공간

☑ 가급적이면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

- 가정용품(식기, 음료수 잔, 컵, 식기류, 침구류 등)을 공유하지 말고 개인별로 사용하며 사용 후 세정제와 물로 철저히 세척
- 청소 및 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며 청소 및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과 눈을 만지지 말 것
- 소독제 준비 (제조업체의 지침 준수)
-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둘 것
- 거주 장소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하여 소독
 - 소독 부위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소독하지 않은 장소에서 소독한 장소로 이동하지 말 것
- 준비된 소독제로 천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*와 화장실 표면을 닦음
 - * 손잡이, 팔걸이, 시트백, 테이블, 키보드, 마우스, 스위치, 블라인드, 창문, 벽 등
-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소독제를 분사하지 말 것
 - * 감염성 물질은 에어로졸화할 가능성이 있음
- 침대 시트, 베개 덮개, 담요 등 세탁 가능 직물은 세탁기와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
 - 온수 세탁 사이클의 경우 세제, 소독제로 70℃에서 25분 이상 물로 세탁

- 저온(즉, 70 °C미만) 세탁 사이클을 사용하는 경우 적절한 농도로 사용할 경우 저온 세척에 적합한 화학 물질을 선택
- 의사환자가 감염이 없다고 판단될 때(검사결과 음성)까지 사용했던 매트리스, 베개, 카펫 또는 쿠션 등(세탁할 수 없는 직물)은 사용금지
 - 검사결과 양성이면 직물 재질과 같은 투과성 표면은 새 것으로 교체하거나
 - 사용한 직물 재질은 폐기하거나 폐기가 어렵다면 차아염소산나트륨(500ppm) 소독액에 30분간 침적 소독
- 사용한 모든 천(타올) 및 청소시 발생하는 기타 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림
- 장갑을 벗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리고 비누와 물로 손씻기 수행
- 마스크를 벗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리고 비누와 물로 손씻기 수행
- 청소 및 소독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폐기물은 가능한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
 - ☞ 자가 격리의 생활폐기물 관리 · 처리 매뉴얼 참조
- 청소 및 소독 후 즉시 샤워하고 다른 옷으로 갈아 입기
- 청소 및 소독 후 최소 2시간 이상 환기를 한 후 물에 적신 깨끗한 일회용 천(타올)로 표면을 닦기



2. 환자에 노출된 지역

환자 노출 장소는 다음 지침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후,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장소 사용 가능

*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,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하루 사용 금지

- 오염된 환경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인된 장소를 표시하고, 오염된 물건은 밀폐할 것
 - * 다른 사람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
- 청소/소독 장비를 준비
- 확진 환자가 있었던 장소를 청소 및 소독 할 때는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소독 요원을 배치
 - 장갑이 더러워지거나 손상되면 제거하고 새 장갑을 착용
 - 청소 활동이 완료된 후 일회용 개인보호구를 탈의 후 폐기
 - 고글(사용하는 경우)은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사용 후마다 소독

- 개인보호구를 제거한 직후 비누와 물로 손씻기
-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두기
- 천(타올)에 소독제를 적신 후 표면에 도포
 - 스프레이로 소독 시 적용 범위가 불확실하고 스프레이로 에어로졸 생성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해서는 안됨
 - * 액체가 튀어서 에어로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
 - 에어로졸이 생성되거나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이나 수평 표면을 청소 및 소독할 때는 지속적으로 닦기
 - 압축 공기 사용과 같이 감염성 물질을 에어로졸화할 수 있는 세척 방법은 금지
- 소독제로 바닥을 닦기(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(500ppm~1000ppm))
- 소독제로 자주 접촉하는 부분* 및 화장실 표면을 닦은 후 건조
 - * 엘리베이터 버튼, 손잡이 레일, 문 손잡이, 팔걸이, 등받이, 책상, 조명 조절 장치, 키보드, 스위치 등
- 블라인드 뿐만 아니라 최대 3미터 높이의 벽을 소독제로 닦기(차아염소산 나트륨 희석(500ppm~1000ppm))
- 온수를 사용하여 세탁용 커튼, 직물, 이불 등을 세탁기로 세탁
 - 온수 세탁 사이클의 경우 세제, 소독제로 70 °C에서 25분 이상 물로 세탁
 - 저온(70°C 미만) 세탁 사이클을 사용하는 경우 적절한 농도로 사용할 경우 저온 세척에 적합한 소독제를 선택
- 전문소독업체는 환자가 사용한 매트리스, 베개, 쿠션 또는 카펫을 적절하게 소독
 - 직물 재질과 같은 투과성 표면은 새 것으로 교체
 - 사용한 직물 재질은 폐기하거나 폐기가 어렵다면 차아염소산나트륨(500ppm) 소독액에 30분간 침적 소독
- 다시 소독제로 여러 번 바닥 청소 시행
- 양동이는 소독제 (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(1000ppm), 10분 이상) 용액에 담그거나 뜨거운 물로 헹궈서 소독
-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 영역을 청소 후에는 비 다공성 청소 장비* 를 소독하고, 천(타올) 등 흡수성 재료로 만든 청소/소독 장비는 폐기
 - * 소독 장비는 다른 일반 장비와 구분
- 소독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의료용 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리기
 - ☞ 자가 격리의 생활폐기물 관리 · 처리 매뉴얼 참조 📄

